

2021년도 (재)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

의안 번호	1959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1. 8. 26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
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(재)달성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: 260백만 원

- 2021년 군 금고 출연 대외협력사업비(농협 2.5억 원, 대구은행 1천만 원)를
달성장학재단 장학기금으로 출연.
- 관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인재들의 면학을
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달성군을 빛낼 훌륭한 인재들을
발굴 및 양성

3. 출연 심의요구서 : 따로 붙임

4.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: 따로 붙임

5. 참고자료 : 따로 붙임

- 출연기관 현황
- 관계 법령

출연 심의요구서

출 연 대 상	○ 기 관 명 : (재)달성장학재단 ○ 대 표 : 김 문 오 ○ 소 재 지 :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○ 기본재산 : 27,572백만 원																					
출 연 사업비	○ 출연 예정금액 : 260백만 원(군비) 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백만원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0%;">구 분</th>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0%;">사업 기간</th>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0%;">2021년 제2회추경</th><th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재 원 별</th></tr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계</th><th style="width: 10%;">국비</th><th style="width: 10%;">시비</th><th style="width: 10%;">군비</th><th style="width: 10%;">기타</th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장학사업 (기본재산증자)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1 년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60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60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60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</tr> </table>	구 분	사업 기간	2021년 제2회추경	재 원 별					계	국비	시비	군비	기타	장학사업 (기본재산증자)	2021 년	260	260	-	-	260	-
구 분	사업 기간				2021년 제2회추경	재 원 별																
		계	국비	시비		군비	기타															
장학사업 (기본재산증자)	2021 년	260	260	-	-	260	-															
출 연 필요성	○ (재)달성장학재단 정관 제4조(사업) 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익사업으로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함. ○ 현재 장학기금으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장학금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이에 맞게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장학금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.																					
근 거 법 령	○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○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○ 지방재정법 ○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																					
사업부서 의 견 (총평)	○ 우리군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면학 분위기를 높이기 위하여 출연금을 증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																					

사업부서 검토의견서

1.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(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)
 - 해당사항 없음

2.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

- (재)달성장학재단 기본재산 증자를 위한 달성군 출연 : 260백만 원
 -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60백만 원
 - 급증하는 달성군민과 더불어 장학금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군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증자하여, 더 많은 이자수익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자 함.

3.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0년 출연액	2021년 출연액	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(안)		
			기관 요구액(A)	부서 검토액 (B)	증감 (B-A)
총 계	4,310	3,000	260	260	0
기관운영비	해 당	사	항	없	음
인건비					
경상비					
사업비					
장학사업 (기본재산증자)	4,310	3,000	260	260	0

출연기관 현황

기 관 명	(재)달성장학재단				전화번호	053-668-3982	
					홈페이지	www.dsjanghak.or.kr	
설립근거	법 률 : 민법,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: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: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						
주요연혁	설립연도 : 2000년 설립허가년월일 : 2000. 4. 4. 법인성립년월일 : 2000. 4. 26.						
임원 (21. 7. 1 현재)	직책	성명	주요경력			임기	
	이사장	김문오	달성군수(당연직)			2010. 7. 1 ~ 재임기간	
	비상임이사	송정근	농협달성군지부장(당연직)			2021. 1. 1 ~ 2024.12.31	
	비상임이사	박명규	前 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장			2021. 1. 1 ~ 2024.12.31	
	비상임이사	서정우	前 달성군의원			2021. 1. 1 ~ 2024.12.31	
	비상임이사	이대현	농업			2021. 1. 1 ~ 2024.12.31	
	비상임이사	신창섭	자영업			2021. 1. 1 ~ 2024.12.31	
	비상임이사	김동조	前 가창새마을금고이사장			2021. 1. 1 ~ 2024.12.31	
	비상임이사	박지팔	구지사회안전망 구지면 회장			2021. 1. 1 ~ 2024.12.31	
	비상임이사	곽두섭	前 유가농협장			2021. 1. 1 ~ 2024.12.31	
	비상임이사	석재추	前 옥포읍면영회장			2019.6.21~ 2023. 6.20	
	비상임이사	조성래	논공읍 체육회 이사			2021. 1. 1 ~ 2024.12.31	
	비상임이사	홍진웅	화원새마을금고 이사장			2021. 1. 1 ~ 2024.12.31	
	비상임감사	채수열	前 현풍고 행정실장			2021. 6.21 ~ 2023. 6.20	
	비상임감사	배경옥	달성군 회계과장(당연직)			2021.7. 1 ~ 재직기간	
주요기능	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,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달성군을 빛낼 훌륭한 인재들의 면학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과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훌륭한 인재를 발굴·양성함을 목적으로 함.						
최근3년간 예산현황	연 도	2019년	2020년	2021년	재무현황 2020.12.31. 기준	자산	24,968백만 원
	예산액	3,626백만 원	4,649백만 원	3,770백만 원		부채	0백만 원
	지자체 지원액	3,320백만 원	4,310백만 원	3,000백만 원		자본	24,968백만 원

1.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
2.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

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설립 목적

2. 주요 업무와 사업

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
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□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기금출연) ①군수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군수가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